

Focus

포커스

눈앞 다가온 제조물책임(PL)법 시행, 준비 어떻게 해야하나?

제품 위험성·사용상 주의점 라벨·설명서에 충분히 알려야

‘과도한 효능·기능 광고’ 사고발생 시 지시 경고상 결함
‘최고경영자의 PL마인드 구축’ 전사적 대응 위해 가장 중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PL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이 5인 이상 300인 이하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물책임법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전체의 92%가 PL법에 대해 임직원 모두가 전혀 모르거나 회사 내 일부 인원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중인 기업이 전체의 28.2%로 낮게 나타났으며 자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제거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은 불과 16.4%에 불과하였다. 특히, OEM 생산 납품의 경우 모기업 혹은 거래 기업 간의 계약에 있어 계약서 상으로 PL 문제를 명확히 하는 기업이 전체의 32.8%로 나타나 나머지 67.2%의 기업은 향후 PL 문제 발생 시 분쟁의 가능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물책임 대응체계 구축 시 애로 사항에 대해서 정보 부족이 54.2%, 전문인력 부족이 53.1%, 제조물 책임에 대한 이해 부족이 48.9%, 자금 부족이 43.9%로 조사됐으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자금 지원, 진단/지도, 교육/홍보, 정보제공, 원인규명, 분쟁조정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업들은 시행 4개월 여를 앞두고 있는 제조물책임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대응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농약업체의 경우, 농약 오용은 물론 방제중 사망자, 최근에는 농약을 밀가루로 오인하여 부침개 혹은 팥죽을 만들어 먹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PL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조물 책임의 개념 · 입법과정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법리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라고 한다. 이러한 제조물책임의 입법 배경으로는 첫째, 산업 사회의 진전과 현대의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도 고도화·복잡화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의 성분, 성능, 제조공정 및 사용 방법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스스로 알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여도 소비자는 제조사의 고의 혹은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와 제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결함 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사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하여 왔으며,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둘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물 그 자체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확대 손해를 구제하는데 의의가 있다.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이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 등(판매업자, 수입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가하는 제도를 말하며 시행목적은 피해자의 보호, 국민 생활의 안전 향상,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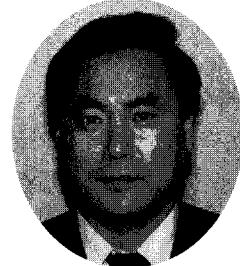
□ 결함이란 무엇인가? 결합(제2조)은 소비자의 안전을 해치는 것,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써 설계/제조/표시(지시, 경고) 상의 결함으로 구분된다.

□ PL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조물이란 무엇인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한다.』(법 제2조 제1호)로 되어 있어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과 미가공된 1차 농·수·축산물을 제외된다.

□ 누가 책임지는가?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는 제조물을 업으로 하는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자와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작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자가 되고,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손해배상 책임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법 제2조 제3호 및 제3조 제2항).

□ 무엇을 책임지는가? 제조물의 책임 원칙으로써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1항). 따라서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는 무과실 책임 내지 제조물의 결함 책임을 도입한 것이다.

□ 어떤 경우에 책임을 면하는가? 제조업자의 면책 사유로서 네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당해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조



권동명

한국표준협회관설팅 수석전문위원

Focus

포커스

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했을 때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법 제4조).

□ 책임이 여러 사람에게 있을 때는?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와 같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법 제5조). 이 법에 의한 제조업자의 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법 제6조).

□ 얼마동안 책임지는가? 책임기간의 제한으로서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3년으로 하고, 제조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 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7조).

□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2002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 기존의 민법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 제조물책임법이 없는 경우에 제조물 관련 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행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해자(제조업자)의 과실 △손해의 발생 △손해의 발생과 제조업자의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제조물의 제조 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곤란하게 되어 피해자

의 입증 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변경했다. 즉, 주관적인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요건의 객관적인 제조물 「결함」으로 전환된 것이다.

농약과 PL법

농약에 의한 안전 나고

농약의 경우 다른 제조물보다 독성이 강하고 사용상 중독 및 오용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오용 혹은 중독 사고의 경우 사용자의 잘못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PL법 시행 이후에는 사용자의 잘못과 함께 제조자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농약에 대한 PL 소송은 어떤 형태로든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각 기업에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약 클레임과 제조물 책임

PL법에서는 제조물 「결함」에 의해 사람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경우의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함」은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지시 경고상의 결함 등 3가지로 분류한다.

설계상의 결함으로는 농약 첨가 약제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해, 약화 사고의 경우 최초 설계 시부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농약 포장 용기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오음 혹은 오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밀가루 오인 사고는 첨가 약제의 잘못에 의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조상의 결함으로는 생산 중 원제의 주성분 미비, 부제의 효과성 문제, 생산 과정중 이물질

흔히에 의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생산 과정 중 포장의 잘못으로 인하여 제품 사용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제조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지시 경고상의 결함으로는 제품의 위험성과 사용상의 주의점을 포장지 라벨 혹은 사용 설명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며, 선전 시에도 과도한 효능과 기능을 강조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시 경고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농약의 PL 대책

PSMS(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구축

농약의 PL 대책은 크게 사전관리와 사후관리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관리시스템에는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ve)와 ISO 9000 시스템에 의한 관리를 들 수 있고 사후관리시스템에는 PLD(Product Liability Defense), PLI(Product Liability Insurance) 등이 있다.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 및 수립에서 PS계획→실시→점검 및 모니터링→분석→평가 및 개선 대책→개선 등의 순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고, 현재의 활동을 조사하여 제품 안전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부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후 보험 문제나 법적인 측면에서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최고경영자의 PL마인드 구축

PL에 대한 전사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최고경영자의 PL마인드 구축이다. 최고경영자의 관심이나 지원 없이는 전사적인 대응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물 책임의 위험

성을 간과한채 『제조물 책임과 우리회사와는 관련성이 없다』『기존의 생산체계에서 불량을 줄이면 된다』『우리 회사는 품질관리를 잘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겠지』『안전기준, 규칙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정부 관련법을 만족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등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고 경영자는 기존의 관념에서 탈피하여 제품안전경영시스템을 새롭게 재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제품안전에 대한 경영방침 및 목표의 확립

최고경영자의 PL 마인드가 구축되었다면 PL대응시스템을 위한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한 후 실질적인 활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기업의 최고경영자로부터 설계 생산 검사 A/S 판매 등에 관여하는 전 사원에 이르기까지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조물책임에 대응하는 조직의 정비

제품안전성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제품안전관리 활동의 추진, 제품사고의 실태 조사, 제품안전기준의 확립, 제조물 책임 관련 정보(소송사례, 판례), 사고발생시의 대응 등을 위하여 본사 및 각 사업본부, 공장마다 PL전담팀을 구성하거나 기존 조직에서 PL을 전담하는 부서를 정하고 제품안전(PS)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전사적인 PL 대응시스템 구축

PL 방침 및 목표가 수립되고 PSMS 전담조직이 구성되면 기획, 설계 및 개발, 구매, 생산, 품질관리, A/S, 소비자상담 부서 등을 중심으로 제품안전관리에 대한 사내 전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적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농약정보**